



제 422회 국회(임시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대학등의 장애학생을 위한 원격교육 협력 의무〉

■ 강경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715호)

2025. 2.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대학등의 장애학생을 위한 원격교육 협력 의무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강경숙의원 등 14인

나. 발 의 일 : 2024. 11. 20.

다. 회 부 일 : 2024. 11.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원격교육 수강에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기본원칙을 두고, 장애학생이 원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코로나-19 이후 대학에서의 원격교육이 확대되고 있는데, 원격교육 인프라의 부족과 장애 특성을 고려한 원격교육 콘텐츠의 부족 등으로 장애학생이 학습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학등의 장애계 다른 국내외 대학등의 장과 원격교육과 관련된 정보 교환, 원격교육콘텐츠 공동 개발, 학점 교류 및 인프라의 공유 등에 있어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원격교육콘텐츠 확보 등 장애학생의 특별한 수요를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차별없는 원격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후단 신설).

Ⅲ. 검토의견

□ 대학등의 장애학생을 위한 원격교육 협력 의무

개정안은 대학등의 장이 다른 국내외 대학등의 장과 협력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원격교육콘텐츠를 확보하는 등 장애학생의 특별한 수요를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차별없는 원격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대학등의 원격교육 협력 의무) ① 대학등의 장은 다른 국내외 대학등의 장과 원격교육과 관련된 정보교환, 원격교육콘텐츠 공동 개발, 학점 교류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프라의 공유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13조(대학등의 원격교육 협력 의무) ① ----- ----- ----- ----- ----- -----, 이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원격교육콘텐츠 확보 등 장애학생의 특별한 수요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현행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이하 “원격교육법”이라 함)은 교육기관¹⁾에서 양질의 원격교육²⁾이 운영될 수 있도록 원

1)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격교육의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로서, 원격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교육기관의 책무 및 국가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같은 법 제3조³⁾는 교육기관의 장은 원격교육을 운영함에 있어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학생이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4조⁴⁾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원격교육에 대한 정

-
1.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을 말한다.
 - 가.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라.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 마.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
 - 2)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원격교육”이란 교육기관이 지능정보기술(「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말한다)과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시간적·공간적 제약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실시하는 일체의 교육활동(다수의 교육기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3)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3조(기본원칙)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원격교육을 운영할 수 있다.
 - ② 교육기관의 장은 원격교육을 단독으로 운영하거나 대면(對面)교육과 병행함에 있어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교육기관의 장은 원격교육을 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학생이 신체적·정신적 장애, 생활수준 또는 국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원격교육 운영과 관련하여 학생 또는 부모 등 보호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것
 3. 원격교육 운영과 관련한 교원의 전문성을 존중할 것
 - 4)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원격교육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며 원격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장애학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이 원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래 변화에 대응하여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생애주기별 디지털 역량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책을 수립·시행, 원격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하며,

특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학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격교육 취약계층의 학생”⁵⁾이 원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필요한 지원 의무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또한, 원격교육법 제13조⁶⁾에서는 대학등의 장이 다른 국내외 대학등의 장과 원격교육과 관련된 정보 교환, 원격교육콘텐츠 공동 개발, 학점 교류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프라의 공유 등을 위하여 노력하고,

-
- 5)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제2조(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장애학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이란 교육기관에 재학하는 다음 각 호의 학생을 말한다.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학생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자녀인 학생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학생
 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학생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인 학생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학생으로서 원격교육과 관련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학생
- 6)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13조(대학등의 원격교육 협력 의무) ① 대학등의 장은 다른 국내외 대학등의 장과 원격교육과 관련된 정보 교환, 원격교육콘텐츠 공동 개발, 학점 교류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프라의 공유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대학등의 장은 평생교육을 활성화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원격교육 과정을 공개강좌로 운영할 수 있다.

같은 법 제15조7)에서 대학등의 장은 원격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구·장비 및 시설 등 원격교육 인프라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학등의 원격교육을 위하여 원격교육콘텐츠 및 관련 기술 개발, 원격교육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시설 구축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8)에서 대학등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원격교육 인프라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원격교육 인프라의 안정성·보안성 및 사용자 편의성, 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 참여 및 학습권 보장을 고려하여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의 제안이유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대다수의 대학이 원격교육 체제로 전환되는 가운데 디지털 기기와 보조기구 등 원격교육의 인프라 부족과 장애 특성을 고려한 원격교육의 콘텐츠 부

7)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15조(대학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① 대학등의 장은 원격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구·장비 및 시설 등 원격교육 인프라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학등의 원격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원격교육콘텐츠 및 관련 기술 개발
2. 원격교육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시설 구축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대학등의 원격교육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8)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제7조(대학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 대학등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원격교육 인프라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조치해야 한다.

1. 원격교육 인프라의 안정성·보안성 및 사용자 편의성
2. 제2조에 따른 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 참여 및 학습권 보장

족 등으로 장애 학생이 학습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각 대학이 협력하여 장애 학생의 접근성을 고려한 원격교육의 인프라 구축 및 콘텐츠를 개발·보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대학등의 장이 다른 국내외 대학등의 장과 협력하여 원격교육과 관련된 정보교환, 원격교육콘텐츠 공동 개발, 학점 교류 및 인프라의 공유 등에 있어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원격교육콘텐츠 확보 등 장애학생의 특별한 수요를 고려한 차별없는 원격교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법에 명시함으로써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원격교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대학등의 장은 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 참여 및 학습권 보장을 고려하여 원격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구·장비 및 시설 등 원격교육 인프라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다른 국내외 대학등의 장과 원격교육과 관련된 정보 교환, 원격교육 콘텐츠 공동 개발, 학점 교류 및 인프라의 공유 등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원격교육 협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안의 취지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동법이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본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

안은 장애학생을 위한 차별없는 원격교육 환경을 조성한다는 선언적인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임.

교육부는 장애학생의 충분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대학의 장이 원격교육콘텐츠 확보 등 장애학생의 특별한 수요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법개정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93